

이사회 규정

[서식정비 2025. 6. 1. BR-A4v1]

주식회사 보령

목 차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[목적]

제 2 조 [적용범위]

제 3 조 [직무와 권한]

제 4 조 [운영규정]

제 2 장 구성

제 5 조 [이사회의 구성]

제 6 조 [의장]

제 3 장 회의

제 7 조 [회의의 종류]

제 8 조 [소집권자]

제 9 조 [소집절차]

제 10 조 [의사의 진행]

제 11 조 [결의방법]

제 12 조 [이사회 내 위원회]

제 13 조 [의사록]

제 14 조 [사후승인]

제 4 장 부의사항

제 15 조 [부의사항의 종류]

제 16 조 [결의사항]

제 17 조 [보고사항]

제 5 장 기타

제 18 조 [간사]

부칙

조문별 근거 법규등 정리표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[목적]

이 사규는 주식회사 보령(이하 "회사"라 한다)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적용범위]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[직무와 권한]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.
-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에 부여한 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④ 사외이사는 필요 시 내·외부 전문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, 사외이사가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 및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 4 조 [운영규정]

이 사규의 제·개정에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한다.

제 2 장 구성

제 5 조 [이사회에 구성]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6 조 [의장]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.
- ②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대행하되, 지정이 없거나 불가능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1. 대표이사
 - 2. 사내이사 중 상위 직급자
 - 3. 사외이사

제 3 장 회의**제 7 조 [회의의 종류]**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 조 [소집권자]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6 조 제 2 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 1 항의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 [소집절차]

- ① 이사회회의 소집을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 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0 조 [의사의 진행]

이사회 의장은 이사회회의 의사를 진행하고,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,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1 조 [결의방법]

-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보다 강화된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.
 - 1.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: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
 - 2. 상법 제 398 조(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) :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
 - 3. 기타법령 :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
- ② 이사회 출석 인원 중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 2 항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
이 경우 당해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의안건과 관계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2 조 [이사회 내 위원회]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. 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 13 조 [의사록]

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안건,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
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14 조 [사후승인]

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

제 4 장 부의사항

제 15 조 [부의사항의 종류]

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결의사항, 보고사항, 논의사항으로 구분한다.

1. 결의사항 :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로 결의함.

2. 보고사항 :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결의에 갈음함.
3. 논의사항 : 차기 이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사전논의가 필요한 경우 부의하며, 결의를 요하지 않음.

제 16 조 [결의사항]

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상정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.

1. 주주총회의 소집
2.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3. 정관의 변경
4. 자본금의 감소
5.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6. 주식의 소각
7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8.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9. 주식배당 결정
10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11.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
12. 이사의 보수한도
13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②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법령, 정관 및 중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.

1. 중요한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
2. 지점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3.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4. 경영활동상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(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)
5. 중요한 소송의 제기

6. 특수관계자와의 연간 거래한도(한도 초과시는 별도 추가 승인)

③ 이사회는 회사의 조직 및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, 정관 및 중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.

1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2.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
3. 성과연동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계약사항에 따른 성과평가

④ 이사회는 회사의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법령, 정관 및 중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.

1.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의 5/100 이상 유·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
2. 자기자본의 10/100 이상 신규시설투자, 증설 및 별도공장의 신설
3. 자기자본의 5/100 이상 출자, 타회사 주식취득 및 희석증권 등 지분전환 가능 증권의 취득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취득한 동 금융자산의 처분
4. 계열회사의 신규편입 및 제외

⑤ 이사회는 회사의 재무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, 정관 및 중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.

1. 신주의 발행 및 실권주의 처리
2. 회사채의 발행사항에 대한 결정
3.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에 대한 결정
4.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
5. 준비금의 자본전입
6.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7. 타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, 담보제공 및 채권의 포기 또는 인수의 결정
8. 자기자본의 10/10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(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,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)
9.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의 결정

⑥ 이사회는 이사 및 이사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중요성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해

결의한다.

1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2. 이사회 의장의 선임
 3.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
 4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5.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6.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(필요시)
 7.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8. 이사의 경업 승인
 9.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이용의 승인
- ⑦ 이사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.
- ⑧ 상기 결의사항의 부의기준에 미달하는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되, 대표이사는 개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 17 조 [보고사항]

- ①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연간 경영계획
 2. 분기별 결산 보고
 3.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
 4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
가 인정한 사항
 5.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진행 경과 또는 결과
 6.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중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
 7.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관한 사항
 8. ESG 경영 추진실적 및 계획 (환경, 사회, 지배구조 관련 경영성과 및 경영 이슈),
ESG 중대성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: 연 1 회 이상 보고

9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② 상기 보고사항 이외의 유사한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되, 대표이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 5 장 기타

제 18 조 [간사]

이사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부칙 <BR-A4v1, 2025.6.1.>

제 1 조 [시행일]

이 사규는 202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1983 년 2 월 1 일부로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7 년 6 월 1 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8 년 4 월 1 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22 년 3 월 25 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23 년 5 월 9 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24 년 4 월 23 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.

[조문별 근거법규등 정리표 (2025. 6. 1. 기준)]

조문	근거법령 등
제 1 조 (목적)	
제 2 조 (적용범위)	
제 3 조 (직무와 권한)	상법 제 393 조(이사회의 권한), 정관 제 37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제 1 항
제 4 조 (운영규정)	
제 5 조 (이사회의 구성)	상법 제 393 조(이사회의 권한), 정관 제 37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제 1 항
제 6 조 (의장)	정관 제 38 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 제 4 항
제 7 조 (회의의 종류)	
제 8 조 (소집권자)	상법 제 390 조(이사회의 소집), 정관 제 37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제 2 항, 제 4 항
제 9 조 (소집절차)	상법 제 390 조(이사회의 소집), 정관 제 37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제 2 항
제 10 조 (의사의 진행)	
제 11 조 (결의방법)	상법 제 391 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, 제 397 조의 2, 제 398 조, 정관 제 38 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 제 1 항, 제 2 항, 제 3 항
제 12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	상법 제 393 조의 2(이사회내 위원회), 정관 제 37 조의 1(위원회)
제 13 조 (의사록)	상법 제 391 조의 3(이사회의 의사록), 정관 제 39 조(이사회의 의사록)
제 14 조 (사후승인)	
제 15 조 (부의사항의 종류)	
제 16 조 (결의사항)	상법 제 393 조(이사회의 권한)
제 17 조 (보고사항)	상법 제 393 조(이사회의 권한)
제 18 조 (간사)	